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633
----------	-------

발의연월일 : 2025. 10. 17.

발 의 자 : 이인선 · 최은석 · 윤영석
우재준 · 임이자 · 이달희
김장겸 · 김대식 · 김위상
한지아 · 박성훈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자가 일정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 선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음. 이러한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의 생계와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양육비 선지급 대상이 되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하는데, 이로 인하여 과도한 소득·재산 자료의 증빙·조회가 요구됨에 따라 선지급 신청자의 고충과 행정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모든 자녀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최적의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으므로 해당 소득 요건은 폐지되어야 마땅함.

이에 양육비 선지급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중 소득 요건을 폐지함

으로써 제도를 개선하고 모든 한부모 가정이 안전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6, 제21조의8 및 제21조의1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6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1조의8제2항제2호 중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거나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제21조의6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는”으로 한다.

제21조의11제1항 중 “필요한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21조의6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로, “생활환경 및 소득자료”를 “생활환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의 변동 여부”를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관련 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을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금융·출입국·병무·교정”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육비 선지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제21조의6제1항 및 제21조의11제1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 ①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생략) 2.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3. (생략) ② ~ ④ (생략) 제21조의8(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 등) ① (생략)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 ① ----- ----- ----- ----- ----- ----- --.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의8(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생 략)

2.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거나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제21조의6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등 양육비 선지급의 사유가 상실된 경우

③ ~ ⑤ (생 략)

제21조의11(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에 대하여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선지급 신청인의 주거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생활환경 및 소득자료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1. (현행과 같음)

2. -----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는-----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의11(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 ① -----

-----제21조의6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
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생활환경-----

-----.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의 변동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조사, 관계인에 대한 질문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생략)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지급 신청인 또는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② -----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

-----관련
자료-----

-----.

③ (현행과 같음)

④ -----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금융·출입국·병무·교정-----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 행정기관, 법원행정처, 지방자 치단체 및 그 밖에 관련 기관 · 단체의 장(이하 “관계 중앙 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 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라야 한다. ⑤ (생 략)	----- ----- ----- . --- ----- ----- ----- -----. ⑤ (현행과 같음)
--	---